

11-가.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

11-가-1.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[PDF]

■ 공시지침

【공시기관】 :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대학원대학

【원자료조사시기】 : 수시

【공시시기】 : 수시(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시)

【공시방법】 : 직접입력

【공시내용】 :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

【공시양식】 : 학교의 자체 양식(PDF 파일 형태)

■ 작성지침

【학교 발전계획】 : 대학/대학원 발전을 위한 대학의 비전과 전략 설정 배경(대내외 환경 분석 등), 대학 비전 및 목표, 추진전략, 교육 여건 개선 계획, 학사구조 개편, 구조개혁, 기타 등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

【학교 특성화계획】 : 대학본부 관점에서, 대학원 특성화계획은 대학원 관점에서 특성화 분야, 학교발전계획과의 연계 사항, 재정집행계획(자체투자, 연관 재정지원사업 등), 특성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계획, 특성화 분야 지원인프라 개선계획(교원 등), 특성화학과(전공)명 등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

【확정일】 :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확정일(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일)

■ 참고사항

-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입력
- 확정된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을 공시하는 경우 이전자료 삭제 후 ‘최신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’만 업로드 후 공시